

# 『폐합성수지류 위탁·처리』 계약서

동작구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(폐합성수지류 등)처리에 관하여  
동작구경리관(이하 “발주기관” 이라 한다)과 처리업체인 “\_\_\_\_\_”  
” (이하 “계약상대자” 라 한다)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.

## 제1조 (처리대상 및 범위)

- ① 이 계약에 의한 폐기물의 처리대상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.
  1. 대 상 : 폐합성수지, 폐비닐, 음식물쓰레기 이물질류, 기타 소각대상 폐기물
  2. 범 위 : 동작구 전 지역에서 배출되는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(폐합성수지류 등 소각류)
- ② “계약상대자”는 동작구관내에서 수거된 폐기물(폐합성수지류 등)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며 제1조1항에 표시한 폐기물 처리를 “발주기관”으로부터 도급받아 시행한다.

## 제2조 (계약기간 및 도급금액지급방법)

- ①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위탁 도급기간은 도급계약일로부터 2016. 12. 31.까지로 한다. 단, 양자 합의시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차기 계약 시까지 종전 계약과 동일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② 동조 제1항의 도급금액의 지급은 다음과 같이 한다.
  1. 폐기물 위탁 처리비는 한달 30일로 기준하여 월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.
  2. 도급금액 지급방법은 계약기간동안 “계약상대자”는 매월 말일기준 그 다음날 5일까지 청구하고“발주기관”은 청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### **제3조 (처리범위 및 계약조건 변경)**

도급의 범위, 기간, 기타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“발주기관”과 “계약상대자” 쌍방간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 단, 계약체결이 완료된 도급금액에 대하여 “발주기관”과 “계약상대자”는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도급 단가 인하 및 인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.

### **제4조 (채권양도 및 하도급의 금지)**

“계약상대자”는 “발주기관”의 서면승인 없이 본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으며, 질권저당 등 담보 목적물로 이용할 수 없다.

### **제5조 (계약해지)**

“발주기관”과 “계약상대자”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계약 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자가 있을 때에는 “발주기관”과 “계약상대자”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책임을 진다.

### **제6조 (손해배상책임)**

-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“계약상대자”는 이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.
1. “계약상대자” 또는 그 소속 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“발주기관”의 시설에 손실을 입혔을 때
  2. “계약상대자”또는 그 소속 직원이 “발주기관”의 물품 또는 “발주기관”으로부터 대여받은 물품을 망실 또는 손괴하였을때

### **제7조 (계약사항의 해석)**

이 계약의 각 조항에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“발주기관”과 “계약상대자”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“발주기관”의 해석하는 바에 의한다.

## 제8조 (계약금의 환수조치 등)

- ① 계약 체결 후 “계약상대자”가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“발주기관”은 “계약상대자”에 대한 계약금액을 환수조치 할 수 있다.
- ② 계약 당사자는 성실한 업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 놓은 일정금액을 이행 담보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.

## 제9조 (신의 성실의무 및 기타)

- ① “계약상대자”는 폐기물 처리를 수행함에 있어 “발주기관”의 책임관의 감독에 따라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②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사항 외에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을 신의와 성실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,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관리법령 및 폐기물처리용역 표준계약서,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준하며,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여 “발주기관”과 “계약상대자”가 각각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2016년    월    일

□ 과업지시서 : 【별첨2】 참조

**발주기관 : (수집 및 운반)  
동작구 경리관**

**계약상대자 : (위탁 · 처리 “소각” 업체)**